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 등〉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76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3
2. 입장권등 부정판매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10
3. 입장권등 부정판매 벌칙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 신설 (안 제40조 등)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8.

다. 회 부 일 : 2025.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연의 입장권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경우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온라인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넘은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로 변경하고(안 제4조의2제1항), 아울러 누구든지 온라인상에서 그 수단과 관계없이 입장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 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 ----- -----입장권등의 판매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가를 초과하는----- ----- ----- ----- -. ② -----온라인상에서 그 수단과 관계없이----- -----.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조의2제1항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방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

1)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 또한, 동조 제2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른바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항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로 매크로 사용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수사 기관이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판매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아울러 보안 조치를 우회한 사전 접속 등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²⁾.

○ 또한,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연별로 다양한 할인 수단이 제공됨에 따라 실제 구입 가격이 개인마다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8월 26일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의결하면서 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공연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의 전면 금지, ②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③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판매 정가’로 개선, ④ 암표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바 있음.

달라질 수 있어 부정판매 단속·제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던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의 기준을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가격으로의 판매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³⁾ 등의 암표 거래 수법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부정판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암표 신고게시판의 신고건수가 2020년 359건에서 2024년 2,2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음⁴⁾.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판매 제재 강화를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기존 발의안에 있는 여러 내용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3) 아이디 옮기기란 이미 암표 거래 업체가 확보한 입장권등을 취소함과 동시에 구매자의 계정으로 예매하는 방식이고, 대리 티켓팅이란 암표 거래 업체가 구매자의 아이디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아 구매자의 계정으로 직접 예매를 해주는 방식을 의미함.

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암표 신고게시판은 신고된 암표 의심 사례를 티켓 예매처에 송부하여 소명요청 및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암표 신고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고건수	359건	785건	4,224건	2,161건	2,224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벌칙 수준을 강화하는 동법 개정안 7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음⁵⁾.

- 또한, 동법 외에도 암표의 제재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프로스포츠 경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스포츠 경기),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 이용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상영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입장권등 부정판매 관련 공연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강유정의원	- 암표 방지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입법배경에 생체정보 활용(기술적 조치) 명시)
이춘석의원	-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온·오프라인) 금지 - 이득액별 처벌기준 세분화
조계원의원	-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온·오프라인) 금지 - 처벌 강화(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몰수·추징 근거 마련
박수영의원	- 부정판매 기준 가격 변경(구입한 가격→정가) -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온·오프라인) 금지 - 암표 신고기관 지정 - 처벌 강화(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몰수·추징 근거 마련

5) 하단 참고자료 참조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김준혁의원	- 부정판매 금지유형 세분화(방해, 구매, 판매) - 신고포상금 지급 - 이득액별 처벌기준 세분화 - 이득액 몰수·추징 근거 마련
조인철의원	- 매크로 무관 모든 부정판매(온·오프라인) 금지 - 부정판매 가중처벌 - 처벌 강화(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득액 몰수·추징 근거 마련
구자근의원	- 매크로 무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매매 관련 유사 취지 타법 개정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발의자	주요 내용	발의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조계원의의원 등 13인		2024.10.7.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18.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2.10.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5.9.8.
	장철민의의원 등 12인		2025.10.29.
	강유정의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 무관 영화 입장권·관람권 등 부정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등 암표판매 금지 등	2024.10.18.

법률안명	발의자	주요 내용	발의일
	김준혁의원 등 11인		2024.11.6.
	진종오의원 등 12인		2025.2.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의원 등 13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체육시설 이용권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1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온·오프라인 불문 암표매매 행위 처벌	2024.9.2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21.
	조인철의원 등 12인		2024.12.10.
	이훈기의의원 등 14인		2025.4.29.
	양문석의원 등 10인		2025.5.29.
	김선교의원 등 10인	암표매매 처벌 강화	2025.9.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기차 승차권 등의 암표 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연희의원 등 19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구매 금지	2024.1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	2024.12.10.

2. 입장권등 부정판매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 부정판매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7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 공연 입장권등에 대한 압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그 수범도 다양해지고 있어 압표에 대한 단속·적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상금을 활용하여 압표 신고를 장려하고 압표를 근절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 관련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포상금 지급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u>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u>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u>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국민체육진흥법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u>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약사법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u>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3. 입장권등 부정판매 벌칙 상향 및 몰수·추징 근거 신설

(안 제40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0조제1호 신설 및 제41조제1호 삭제)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 수준을 상향함.
-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 6. (생략)	제40조(벌칙) ----- ----- -----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제41조(벌칙) ----- ----- -----

의 벌금에 처한다. <u>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u> 2. ~ 6. (생략) <u><신설></u>	-----. <u><삭제></u> 2. ~ 6. (현행과 같음) <u>제42조의2(몰수·추징) 제40조제</u> <u>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u> <u>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u> <u>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u> <u>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u> <u>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u> <u>액을 추징할 수 있다.</u>
---	--

○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그러나 최근 100만원 이상의 고가로 암표가 거래되어 암표 판매로 얻는 이득액의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등 거래액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기존의 벌칙 규정이 암표 거래로 얻는 이득에 비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6)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7) 김주원 기자, “임영웅·아이유 티켓 팔아요”...암표 사기로 6억원 챙긴 30대 실형’, 매일신문, 2024.1.1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11619054749618>
이유진 기자, ‘변우석 표 30배 폭리, 뮤지컬 암표로 1억 수익...‘티켓 되팔이’들 무더기 검거’, 한국일보, 2024.10.1.<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112360003820?did=NA>

- 이에 개정안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장권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 (신고시스템) 압포 신고게시판 운영(콘진원,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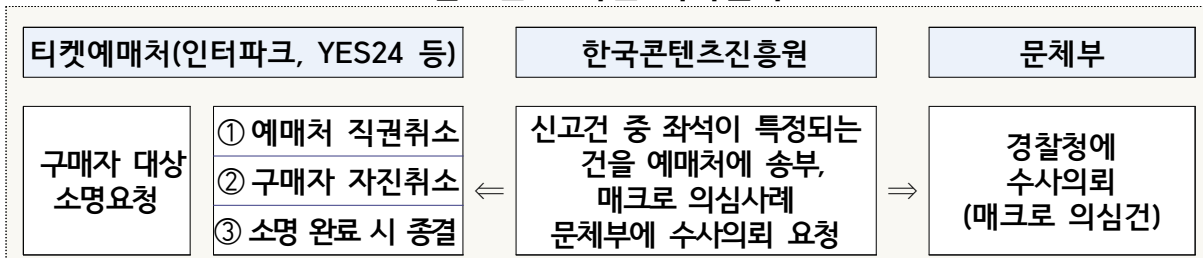
- 의심사례에 대해 티켓예매처 협조로 소명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 진행

* 신고건수: 359건('20) → 785건('21) → 4,224건('22) → 2,161건('23) → 2,224건('24) → 766건('25.6)

조치건수: 유효신고 290건('23.11~'25.6) 중 201건(21건('23), 139건('24), 41건('25.6))

※ 유효신고: 콘진원이 신고 내용을 1차 검증하여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 압포신고 사건 처리절차 >



참고 2

타 입법례(유사 입법례)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경범죄 처벌법」 (14908)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행령에서는 과태료를 16만원으로 규정
「철도사업법」 (17460)	•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알선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에서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규정